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7041호 2026년 6월 16일(화)

경 상 북 도

■ 공 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234호) 3

회								
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234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1. 자치법규명**

- 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정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기구를 재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중심의 인력을 반영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정원 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행정기구 조정

가) (폐지)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APEC준비지원단(안 제5조)

나) (신설) 대변인*, 식품한류산업국, 지방정부전략국(안 제5조)

* 대변인은 기존 '과'단위 기구에서 '국'단위 기구로 개편

다) (명칭변경) 메타AI과학국 → 과학산업국(안 제5조)

2). 분장사무 조정

가) 경제부지사(안 제4조제3항)

- 경제혁신추진단,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해양수산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대변인(안 제5조의2)

- 도정 홍보기획 및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 등

다) 식품한류산업국(안 제6조의5)

- 식품한류산업정책 및 식품세계화에 관한 사항 등

라) 지방정부전략국(안 제7조의2)

- 광역행정, 인구정책, 저출생대응정책, 아이정책, 아이돌봄, 여성정책, 양성평등, 가족복지, 교육정책, 청소년에 관한 사항 등

마) 과학산업국(안 제8조)

- 인공지능정책 및 인공지능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등

바) 경제통상국(안 제8조의2)

- 청년일자리 업무 이관

사) 문화관광체육국(안 제8조의2)

- APEC 유산보존 및 활용, APEC성과 확산 등에 관한 업무 이관

나.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정원의 총수 : 7,971명 → 8,079명(증 108명) (안 제2조)

가) 집행기관의 정원 : 2,295명 → 2,334명(증 39명)

나) 소방공무원의 정원 : 5,489명 → 5,558명(증 69명)

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1명(변동없음)

라)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변동없음)

마)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변동없음)

2). 정원 변동내역

가)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정원 조정 +39명

- 「APEC준비지원단」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조정(경상북도조례 5118호(2024. 9. 9.)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 △10명

- 2급 △1, 4급 △2, 5급 이하 △7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 +49명

- 3급 +1, 4급 +1, 5급 이하 +45, 연구관 +1, 지도사 +1

- ▶ 통합돌봄,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 기준인력 반영 : 7명
- ▶ 로봇, 이차전지, 통합징수 등 지역현안 기준인력 반영 : 13명
- ▶ 건강밥상, 첫걸음연금 등 공약실행 및 행정수요 반영 : 29명

나) 소방조직 정원 조정 : 소방령 이하 +69명

- 현장대응 인력 보강 등 소방공무원 기준인력 반영 : +69명
- 다)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비용추계서 첨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개인은 2026년 6월 17일 (화요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화 : 054-880-2123

- Fax : 054-880-2149

- 이메일 : flyme2u@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혁신추진단,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해양수산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메타AI과학국”을 “식품한류산업국, 지방정부전략국, 과학산업국”으로,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및 APEC준비지원단”을 “복지건강국 및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의 홍보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 홍보기획 및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정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호 중 “행정클라우드, 스마트인프라 및”을 “행정클라우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데이터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제6조의4를 삭제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식품한류산업국) 식품한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한류산업정책 및 식품세계화에 관한 사항
2. 식품산업, 식품창업에 관한 사항
3. 식품관광, 식문화콘텐츠,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한류산업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방정부전략국) 지방정부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행정, 균형정책, 행정통합, 지방분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 저출생대응정책, 출산장려 및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3. 아이정책, 아이돌봄, 여성가족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청소년, 대학정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정부 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메타AI과학국)”을 “(과학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메타AI 및 과학 정책”을 “과학산업정책”으로 한다.

1. 인공지능정책 및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1호 중 “일자리지원”을 “일자리지원, 청년일자리”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항공산업”을 “항공물류”로 한다.

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APEC 유산 및 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호 중 “사회보장·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사회서비스, 통합돌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노인복지 및”을 “노인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식품안전, 공중위생”을 “공중위생”으로 한다.

제14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 제35조 및 제3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부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국 및 해양수산업국을 둔다.

제38조의4제2호,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장제1절에 제38조의5 및 제3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에너지산업국)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

제38조의6(해양수산물) 해양수산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물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산물산업,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

3. 독도해양,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별표 2, 별표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2024년 9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5117호로 개정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APEC준비지원단은 폐지한다.

제3조(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단서 중 “저출생극복본부장”을 “지방정부전략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생극복본부장”을 “지방정부전략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저출생극복본부장”을 “지방정부전략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저출생극복본부장, 지방시대정책국장, 경제통상국장”을 “기획조정실장, 지방정부전략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메타AI과학국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메타AI과학국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알천남로 276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강변로 219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육사로 301	안동시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영주시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호국로 187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경상대로 3203-11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시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	경산시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청송소방서	청송군 청송읍 굿바들길 19	청송군 일원
영양소방서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88	영양군 일원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청도소방서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	청도군 일원
고령소방서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칠곡군 일원
예천소방서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예천군 일원
봉화소방서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3길 152	봉화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일원

[별표 2의2]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제35조의2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119특수대응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길86번길 19-59	
119산불특수대응단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수로 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지사) ①·② (생 략)</p> <p>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과학기술, 경제산업, 해양산업, 공항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2. ~ 4. (생 략)</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행정실, <u>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 정책국,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및 APEC준비지원단</u> 을 두고, 안전행정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둔다.</p> <p>〈신 설〉</p> <p>② (생 략)</p> <p>〈신 설〉</p>	<p>제4조(부지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u>경제혁신추진단,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해양수산물 소관 업무에 관한사항</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p> <p>----- <u>식품한류산업국, 지방정부전략국, 과학산업국</u>-----</p> <p>----- <u>복지건강국 및 건설도시국</u>-----</p> <p>-----.</p> <p>② <u>도의 공보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5조의2(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도정 홍보기획 및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u></p> <p>2. <u>주요 정책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p> <p>제6조의4(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저출생대응정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항</u> 2. <u>아이정책, 아이돌봄 등에 관한 사항</u> 3. <u>여성정책, 양성평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u> 4. <u>교육정책, 청소년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저출생 대응정책에 관한 사항</u> <u><신 설></u></p> <p>제7조(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3. <u>온라인·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u></p> <p>제6조(기획조정실) ----- -----.</p> <p>1. ~ 7. (현행과 같음) 8. <u>데이터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p> <p><u><삭 제></u></p> <p>제6조의5(식품한류산업국) 식품한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식품한류산업정책 및 식품세계화에 관한 사항</u> 2. <u>식품산업, 식품창업에 관한 사항</u> 3. <u>식품관광, 식문화콘텐츠,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식품한류산업에 관한 사항</u> <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1. <u>광역행정, 균형정책, 지방분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u></p> <p>2. <u>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사항</u></p> <p>3. <u>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문화복지에 관한 사항</u></p> <p>4. <u>대학정책에 관한 사항</u></p> <p>5. <u>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지방시대 정책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제8조(메타AI과학국) <u>메타AI과학국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u><신 설></u></p> <p>1. ~ 3. (생 략)</p>	<p>제7조의2(지방정부전략국) <u>지방정부전략국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광역행정, 균형정책, 행정통합, 지방분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u></p> <p>2. <u>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 저출생대응정책, 출산장려 및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u></p> <p>3. <u>아이정책, 아이돌봄, 여성가족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u></p> <p>4. <u>교육지원, 청소년, 대학정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지방정부 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u></p> <p>제8조(과학산업국) <u>과학산업국장</u>----- -----.</p> <p>1. <u>인공지능정책 및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u>데이터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u></p> <p>5. · 6. (생 략)</p> <p>7. 그 밖에 <u>메타AI 및 과학 정책</u>에 관한 사항</p> <p>제8조의2(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경제정책, 시장활성화, <u>일자리지원</u>, 노사정책에 관한 사항</p> <p>2. ~ 6. (생 략)</p> <p>제9조(공항투자본부) 공항투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항공산업</u>에 관한 사항</p> <p>3. ~ 5. (생 략)</p> <p>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6. (생 략)</p> <p>제13조(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국민기초생활보장, <u>사회보장·사회서비스</u>에 관한 사항</p> <p>3. (생 략)</p>	<p><u>〈삭 제〉</u></p> <p>5. · 6. (현행과 같음)</p> <p>7. ----- <u>과학산업정책</u>----- --</p> <p>제8조의2(경제통상국) ----- -----.</p> <p>1. ----- <u>일자리지원, 청년일자리</u>-----</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9조(공항투자본부)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항공물류</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APEC 유산 및 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13조(복지건강국)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회보장·사회서비스, 통합돌봄</u>-----</p> <p>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4. <u>효 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 및 가정 의례지도,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u>	4. ----- 노인복지,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u>식품안전,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u>	8. <u>공중위생</u>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설도시국) <u>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제14조(건설도시국)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u>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5조(APEC준비지원단) <u>APEC준비지원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삭 제〉
1. <u>APEC 성과 분석 및 백서 발간에 관 한 사항</u>	
2. <u>APEC 연계 마이스 산업에 관한 사항</u>	
3. <u>APEC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u>	
4. <u>APEC 시설·유산 사업 예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Post - APEC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제35조(119안전센터 등) <u>소방서의 소관사 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 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를 두고,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 구조구급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u>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5조의5(직할구조대 등) ①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산불대응팀 및 119산불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119산불대응팀 및 119산불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8조의3(본부장) (생략)</p> <p>〈신설〉</p> <p>제38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에너지 및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 항만물류, 독도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4. 5. (생략) 	<p>〈삭제〉</p> <p>제38조의3(본부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본부장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국 및 해양산업국을 둔다.</p> <p>제38조의4(소관사무)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 4.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8조의5(에너지산업국)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
<p>〈신 설〉</p>	<p>제38조의6(해양수산업) 해양수산업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산산업,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 3. 독도해양,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1.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과 관련된 업무
2. 정책의 홍보 및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 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① 시·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금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명칭변경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참고)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생략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송영례(054-880-212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 인력 반영
-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971명 → 8,079명(증 108명) (안 제2조)

- 1) 집행기관의 정원 : 2,295명 → 2,334명(증 39명)
- 2) 소방공무원의 정원 : 5,489명 → 5,558명(증 69명)
-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1명(변동없음)
-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변동없음)
- 5)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변동없음)

나.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1) 정무직 공무원 : 3명(변동없음)
- 2) 일반직 공무원 : 2,183명 → 2,220명(증 37명)
 - 2급 : 2명 → 1명(△1)
 - 2~3급 : 2명(변동없음)

- 3급 : 15명 → 16명(+1)
 - 3~4급 : 3명(변동없음)
 - 4급 : 104명 → 103명(△1)
 - 5급 이하 : 2,041명 → 2,079명(+38)
 - 전문경력관 : 16명(변동없음)
- 3) 별정직 공무원 : 16명(변동없음)
- 4) 연구직 공무원 : 245명 → 246명(증 1명)
- 연구관 : 47명 → 48명(+1)
 - 연구사 : 198명(변동없음)
- 5) 지도직 공무원 : 31명 → 32명(증 1명)
- 지도관 : 10명(변동없음)
 - 지도사 : 21명 → 22명(+1)
- 6) 소방직 공무원 : 5,489명 → 5,558명(증 69명)
- 소방정 : 31명(변동없음)
 - 소방령 이하 : 5,458명 → 5,527명(+69)
- 7) 경찰직 공무원 : 4명(변동없음)

다. 정원 변동내역

- 1)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정원 조정 +39명
- 「APEC준비지원단」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조정(경상북도조례 5118호(2024. 9. 9.)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 △10명
 - 2급 △1, 4급 △2, 5급 이하 △7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 +49명
 - 3급 +1, 4급 +1, 5급 이하 +45, 연구관 +1, 지도사 +1
 - ▶ 통합돌봄,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 기준인력 반영 : 7명
 - ▶ 로봇, 이차전지, 통합징수 등 지역현안 기준인력 반영 : 13명
 - ▶ 건강밥상, 첫걸음연금 등 공약실행 및 행정수요 반영 : 29명

2) 소방조직 정원 조정 : 소방령 이하 +69명

- 현장대응 인력 보강 등 소방공무원 기준인력 반영 : +69명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971명”을 “8,0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95명”을 “2,33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489명”을 “5,55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합 계		8,079	-						
정 무 직		3	1					2	
일 반 직	소 계	2,220							
	2급	1	0			1			
	2~3급	2	1	1					
	3급	16	13		1	2			
	3~4급	3	2	1					
	4급	103	69	10	4	10	8	1	1
	5급 이하	2,079	-						
	전문경력관	16	-						
별 정 직	소 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연 구 직	소 계	246	-						
	연구관	48			47		1		
	연구사	198	-						
지 도 직	소 계	32	-						
	지도관	10			10				
	지도사	22	-						
소 방 직	소 계	5,558	-						
	소방정	31	7		24				
	소방령 이하	5,527	-						
경 찰 직	소 계	4	4						
	경 감	4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971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2,295명</u></p> <p>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119특수대응단·119산불특수대응단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5,489명</u></p> <p>3. ~ 5.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8,079명</u>-----.</p> <p>1. ----- <u>2,334명</u></p> <p>2. ----- ----- ----- <u>5,558명</u></p> <p>3. ~ 5. (현행과 같음)</p>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기관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합계								
합계	7,971		-						
정무직	3	1						2	
일반직	소계	2,183	-						
	2급	2	1			1			
	2~3급	2	1	1					
	3급	15	12		1	2			0
	3~4급	3	2	1					
	4급	104	70	10	4	10	8	1	1
	5급 이하	2,041	-						
	전문경력관	16	-						
별정직	소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연구직	소계	245	-						
	연구관	47			46	1			
	연구사	198	-						
지도직	소계	31	-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소방직	소계	5,489	-						
	소방정	31	7		24				
	소방령 이하	5,458	-						
경찰직	소계	4	4						
	경감	4	4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기관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합계								
합계	8,079		-						
정무직	3	1						2	
일반직	소계	2,220	-						
	2급	1	0			1			
	2~3급	2	1	1					
	3급	16	13		1	2			
	3~4급	3	2	1					
	4급	103	69	10	4	10	8	1	1
	5급 이하	2,079	-						
	전문경력관	16	-						
별정직	소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연구직	소계	246	-						
	연구관	48			47	1			
	연구사	198	-						
지도직	소계	32	-						
	지도관	10			10				
	지도사	22	-						
소방직	소계	5,558	-						
	소방정	31	7		24				
	소방령 이하	5,527	-						
경찰직	소계	4	4						
	경감	4	4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 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호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 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항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 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

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변화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조정에 따라 총 정원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인건비 등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안 제2조)
 -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79명으로 한다.

(단위 : 명)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971	8,079	+108	
집행기관의 정원	2,295	2,334	+39	
소방공무원	5,489	5,558	+69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1	161	0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	22	0	
경찰공무원	4	4	0	

2. 비용추계 전제

가.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한다.

나.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개정안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2026년 107억 7천300만원을 비롯하여 2030년까지 총 5년간 564억 3천9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26 ~ 2030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 계	56,439,132	10,737,498	11,005,851	11,280,918	11,562,915	11,851,950
일반직	21,653,541	4,119,570	4,222,530	4,328,064	4,436,250	4,547,127
소방직	34,785,591	6,617,928	6,783,321	6,952,854	7,126,665	7,304,823

*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일반직(103,054천원), 소방직(93,573천원)
연도별 보수인상률 2.5%를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 비	일반회계	10,737,498	11,005,851	11,280,918	11,562,915	11,851,950	56,439,132
	특별회계						
	기 금						
사·군비							
민간							
기타							
합계		10,737,498	11,005,851	11,280,918	11,562,915	11,851,950	56,439,132

5. 부대의견

○ 2026년도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일반직 : 103,054천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보수인상률은 2.5%를 산정하여 추계 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 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작 성 자

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송영례 (054-880-2123)

"낳으니 사랑, 키우니 행복"



경 상 북 도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 1. 정책기획관-6520(2026. 6.12.)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안	검토의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안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39명, 소방공무원 69명 등 총 108명이 증가하여, 5년간 564억 3천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소요비용은 「2026년도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 보수 인상율 2.5%를 반영하여 추계된 바 추계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안은 기구 명칭 변경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이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서명생략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조영길 예산담당관 지진테
 협조사 시행 예산담당관-7660 (2026. 6. 15.) 접수 정책기획관-6540 (2026. 6. 15.)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